



바이오안전성 포털

<https://bangladeshbiosafety.org/>

환경산림기후변화부

<https://moef.gov.bd/>



# Bangladesh 방글라데시

## 핵심 ABS정보안내서



### 🔍 방글라데시의 ABS 이행 현황

- **국가연락기관**(National Focal Point: NFP): ABS 절차 정보(사전통고승인 절차, 상호합의조건 체결 절차 등)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CBD 사무국과의 연락 업무 등 담당
- **국가책임기관**(Competent National Authority: CNA): 국가 ABS 체제에 따라 접근을 결정, 승인, 보증하고 절차에 대한 자문 제공
- **IRCC**(국제인정 의무준수인증서,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명시된 유전자원이 제공국의 ABS 법령 및 규제요건이 요구하는 사전통고승인과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접근되었음을 확인해주는 인증서

비준현황	생물다양성협약	비준	1994. 05. 03.	발효	1994. 08. 01.
	나고야의정서	비준	2011. 09. 06.	발효	2023. 04. 10.
담당기관	국가연락기관	환경산림기후변화부 (পরিশে, বন ও জলবায়ু পরবির্তন মন্ত্রণালয়) (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			
	국가책임기관	환경산림기후변화부 (পরিশে, বন ও জলবায়ু পরবির্তন মন্ত্রণালয়) (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			
ABS 법령	○	ABS 절차	○		
법령정보	「생물다양성법」(2017) (Biodiversity Act)				
적용 범위	유전자원, 화석(fossil), 파생물, 전통지식				
적용제외	인간유전자원				
접근목적별 절차 구분	해당사항 없음				
이익공유	신청인이 지역당국 또는 이익공유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 자와 합의하여 결정 6개의 기본적인 이익공유 유형 규정(제30조 제2항)				
제재 조치	벌금, 징역				
서식제공	제공하지 않음	IRCC 등록	등록되어 있지 않음		

## 방글라데시의 생물다양성 \*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생물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국가 중 하나이며, 5가지 광범위한 생태계 유형은 해안 및 해양 생태계, 내륙 담수 생태계, 육상 산림 생태계, 구릉 생태계 및 인공 농가 생태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오르(Haor, depressed land) 습지는 방글라데시의 가장 중요한 자연 생태계에 해당하며, 하오르 분지는 풍부한 생물다양성으로 유명합니다. 구릉 생태계는 국토 면적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생태계에는 식물과 동물의 유전자원이 풍부하고 확인된 쌀 품종이 6,000종에 이릅니다.

## 방글라데시의 ABS 핵심 유의 사항

- 방글라데시는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사전통고승인을 통해 유전 자원 연구, 상업적 이용, 생물조사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방글라데시 국내 또는 해외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려는 때에도 위원회의 사전허가가 필요합니다.
- 유전자원에 대한 사전허가는 외국인과 재외 방글라데시 국민에게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ABS 제도는 일반적인 유전자원 외에 유전자가 포함된 화석의 취득 및 이용에도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ABS 제도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구성은 환경부 외 농업부, 국토부, 과학기술부 등 다부처로 구성되며, 지방행정단위의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생물다양성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않으므로 향후 방글라데시의 ABS 법령 제정상황에 주의해야 합니다.

\* CBD 방글라데시 국가정보 <https://www.cbd.int/countries/profile/?country=bd>

# I. 방글라데시 ABS 관련 법령

---

## 01

### ABS 법령 현황

- 방글라데시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그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법」(2017)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지식이나 이익공유와 같은 ABS 관련 정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전통고승인(PIC)의 발급이나 상호합의조건(MAT) 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ABS 법령은 향후 상세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접근 절차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입법이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 02

### ABS 법령의 적용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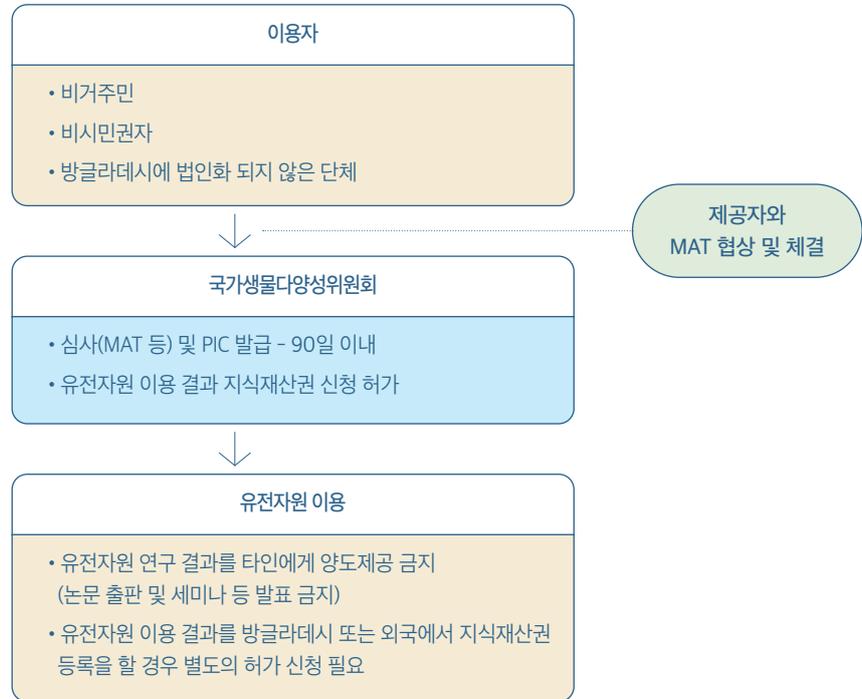
(법 제2조, 제4조)

- ABS 법령은 방글라데시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적용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유전자원 외에 유전자가 포함된 화석의 취득 및 이용에도 적용됩니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에는 사전통고승인(PIC)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용 목적(상업적/비상업적)의 구분 없이 ABS 법령이 적용되며,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아니거나(비거주자, 비시민권자) 방글라데시에 등록된 법인이 아닌 자의 유전자원 이용 행위에 적용됩니다.

## II. 방글라데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접근 절차(법 제4조~제7조, 제30조)

### 01

#### ABS 절차



### 02

####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절차

(상업적·비상업적 모두) (법 제4조)

- 방글라데시 비거주민과 비시민권자 또는 방글라데시에 등록된 법인이 아닌 자가 방글라데시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이용목적(상업적/비상업적)의 구분없이 사전통고승인(PIC)이 필요합니다. 이용자는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익공유에 대하여 상호합의조건(MAT)을 체결하고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에 접근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는 서류를 심사한 후 접근 허가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전통고승인(PIC)이 필요한 행위(법 제4조)

-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수집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상업적 이용 또는 생물조사·이용, 생물실험 등 관련 연구수행
- 유전자원 추출과 관련된 행위
- 유전자원 연구결과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 연구결과 전파 행위 제한(법 제5조)

- 유전자원을 이용한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출판하거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하는 것은 금지
- 단, 정부의 지침에 따라 출판하는 경우, 연구결과 전파 행위로 보지 않음

## 03

### 유전자원 등 이용 결과의 지식재산권 신청 제한

(법 제6조)

- 이용자는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허가 없이 방글라데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발명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신청을 허가할 때, 이익공유 수수료나 로열티 또는 둘 다를 포함하거나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보장할 것을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III. 방글라데시의 이익공유 유형 및 절차

## 01

###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법 제30조)

- 비상업적 및 상업적 목적 구분 없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익공유의 비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며, 이익공유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하위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MAT 계약의 포함 사항)

- ①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이용자와 지역당국 및 합법적 청구인 간의 계약을 통해 이익공유에 대하여 합의할 것
- ② 사전통고승인(PIC)을 허가한 기관과 신청자 간 또는 전통지식 보유자와 이용자 간에 유전자원 이용, 그 파생물 및 전통지식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할 것
- ③ 제공자에게 지식재산권을 부여하거나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보유할 것
- ④ 지역공동체 또는 지역주민에게 유리한 생물다양성의 개발과 관련된 기술의 이전을 할 것
- ⑤ 제공자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해당 분야의 생산, 연구 및 개발일 것
- ⑥ 방글라데시의 과학자 또는 연구기관, 제공자 및 지역공동체가 유전자원의 조사, 자원이용 연구 또는 관련 활동에 참여할 것
- ⑦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제공자에게 금전적 보상 또는 기타 혜택을 제공할 것

## IV. 방글라데시의 ABS 절차 위반 시 제재

### 01 제재조치

사전허가 없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취득·이용 (법 제39조)	사전허가 없이 지식재산권 출원 (법 제4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라크 타카 (한화 약 1,200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li> <li>• 생물 다양성에 미친 손해액이 10 라크 루피 (한화 약 1,600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 벌금액 가중</li> </ul> <p>※ 10라크 타카 = 1백만 타카 = 한화 약 1,200만 원 10라크 루피 = 1백만 루피 = 한화 약 1,600만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라크 타카 (한화 약 1,200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li> </ul>

(2023년 10월 31일 매매 환율 12.24원 기준)

#### [참고 자료 및 사이트]

- 바이오안전성 포털 <https://bangladeshbiosafety.org/>
- 환경산림기후변화부 <https://moef.gov.bd/>
- ABSCH 방글라데시 국가정보 <https://absch.cbd.int/en/countries/BD>

이 요약서는 국내 바이오업계 및 연구자가 외국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접근 또는 이용 시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외국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이용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유전자원 등의 제공국의 나고야의정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